

제2931호
2022. 6.15.

발행인 :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편집인 : 홍보 전 산 과 장 김 영 혜
전화 : 3396-4951
(<http://www.junggu.seoul.kr>)

선	기관의장
람	

구 보

● 자치법규

[예 규]

제179호 :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2

● 고 시

제2022-48호 : 을지로3가구역 제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5

● 공 고

제2022-428호 : 서울특별시 중구 금연구역 지정 행정예고 공고 7

제2022-440호 : 수표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사업사항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11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행정정보→구보/입법예고) 클릭>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51 / FAX.(02)3396-9022/3

●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람												



자 치 법 규

[예 규]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2년 6월 15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예규 제179호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소속 공무원의 직무 관련 부동산의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재물취득의 금지) 소속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서는 안 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한부서”란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서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2. “제한대상자”란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이해관계자”란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되, 같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의 고지 거부 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4. “제한대상자 등”이란 제2호의 제한대상자와 제3호의 이해관계자를 말한다.

5. “직무 관련 부동산”이란 관련 업무 분야 및 관할의 부동산을 말한다.

제4조(부동산 신규취득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 관련 부동산을 새로 취득할 수 없다.

- 1. 제한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
- 2. 제1호의 상급 감독자(「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제1호에 따른 부서의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 ②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부서와 그 직무 관련 부동산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조의14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제5조(부동산 신규취득 여부의 조사) 감사부서의 장은 제한대상자의 부동산 신규 취득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제6조(예외적 취득의 신고) ① 제한대상자는 직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한 날(상속의 경우에는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 사실을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신고는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19에 따르되, 정해진 정보통신망(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하여 한다.
- ③ 제한대상자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조의14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소명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사항의 확인) 감사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른 신고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제한대상자에게 신고 내용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의무 위반시 조치) ① 감사부서의 장은 제한대상자 등이 제4조를 위반하여 직무 관련 부동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 제한대상자에 대하여 6개월 이내 제한대상자 등이 취득한 직무 관련 부동산의 자진매각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감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한대상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1. 제한대상자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제4조에 위반하여 직무 관련 부동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
- 2. 제한대상자가 제6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 기간을 지나 신고한 경우
- 3. 제한대상자가 제4조 또는 제6조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료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제9조(비밀유지 의무) 제4조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 또는 소명자료 등의 내용을 알게 된 사람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0조(기타 세부사항) 감사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운영 등 이 지침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부서와 그 직무 관련 부동산의 범위

실·국명	부서명	주요 직무 내용	제한 부동산의 범위
시민친화국	공원녹지과	산림의 개발,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공원의 조성	직무와 관련된 부동산
생활복지친화국	환경과	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등	
생활도시친화국	도심재생과	도시(지역)의 (재)개발·건설·계획·재생·정비	
	주택과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사항	
	건축과	주택·일반 건축물 건설·공급·인허가	
	도로시설과	도로·철도·하천 등의 건설·개발	
	치수과	상하수도 개발·관리·설치·협의	

※ 직제규정 :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고 시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2-48호

을지로3가구역 제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10호(2016.10.06.)로 을지로3가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 특별시고시 제2021-47호(2021.01.28.)로 정비계획 결정(변경),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21-103호(2021.09.01.)로 사업시행계획인가된 을지로3가구역 제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15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을지로3가구역 제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가 65-14번지 일대
 - 면 적 : 3,963.0㎡ (대지 2,845.5㎡, 정비기반시설 1,117.5㎡)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을지로75피에프브이(주) 대표이사 신장수
 -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2로 87번길 18, 4층 엠피스광고센터 447호
- 4.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2022. 6. 15.
- 5.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
 - 가.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대지면적 (㎡)	건축면적 (㎡)	건폐율 (%)	연면적 (㎡)	용적률 (%)	층 수 (층)	높이 (m)	용 도
2,845.5	1,698.4 (저층부1,906.6)	59.69 (저층부67.11)	44,903.5	989.21	지상17 /지하8	69.9	업무시설, 근생시설

나.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1) 분양대상자 및 분양면적

분양대상자		분양예정의 대지 및 건물			비고
성명	주소	토지(㎡)	건물(㎡)	용도	
을지로75 피에프브이(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2로 87번길 18, 비동 4층 엠펙스광고센터 447호	405.66	6,401.43	근생시설	

2) 체비지 시설 : 토지 2,434.62㎡, 건물 38,419.62㎡

3) 보류지 시설 : 토지 5.22㎡, 건물 82.45㎡

다.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신설					용도폐지				
종류	명칭	규모(㎡)	설치비용(원)	관리청	종류	명칭	규모	국공유지	무상양여
도로	중로3-3	167.3	7,129,960,800	서울특별시 중구	대지	-	504.8	504.8	504.8
도로	소로1-a	36.0	1,857,456,000		도로	-	6.1	6.1	6.1
도로	소로1-b	3.3	123,901,800						
공원	역사공원 (공원2)	174.4	7,648,982,800						
공공청사	공공청사	736.5	34,353,766,400						
도로	소로3-b (지하도로)	-	2,710,000,000						
계		1,117.5	시행자부담				510.9	510.9	510.9

라.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부터 3개월이내

6. 기타 관계도서는 생략(중구청 도심재생과에 비치 ☎02-3396-5774)

공 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2-428호

서울특별시 중구 금연구역 지정 행정예고 공고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7항에 따라 아래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의하여 아래 사항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예고 하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보건소 건강관리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6월 15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1. 지정취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할 구역 내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담배연기 없는 청정한 중구 도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2. 지정일자: 2022. 10. 1.
- 3. 금연 구역 지정 내용
 - 금연구역 명칭 및 소재지
 - 명칭: 케이지타워 주변 도로 금연구역
 - 소재지: 서울 중구 통일로 92 (순화동)
 - 금연구역 지정 범위: 연장길이 108m



4.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가. 과태료 부과 단속일(개시일): 2022. 12. 1.부터

- 홍보 및 계도기간: 지정일로부터 2개월간(단속일 전일인 '22. 11. 30.까지)

※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음

나. 과태료 부과금액: 10만원

5. 행정예고 기간: 2022. 6. 15.~2022. 9. 30. (4개월간)

6. 의견제출 기간: 2022. 6. 15.~2022. 9. 30. (4개월간)

7. 공고방법: 구청 홈페이지, 구보 등

8. 의견제출 방법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제출 기간 내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 2]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보건소 건강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금연구역 지정 행정예고(공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방문, 전자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

- 방문 시: 서울 중구 다산로39길 16, 4층 건강관리과(무학동, 중구보건소)

- 전자우편: nosmo@junggu.seoul.kr

- 팩스번호: 02-3396-8899

제출하는 의견서에 “의견 제출자의 개인정보”는 반드시 기재하셔야 합니다. ※ 미기재 시 접수하지 않음

라. 기타 문의: 중구보건소 건강관리과 건강마을팀 금연사업 담당 ☎02-3396-5672

[붙임 1] 금연구역 지정 장소(아래 그림 중 노란색 선으로 표시한 부분, 108m)



※ 참고사항: 지정 후 해당 장소 주변 전체 금연구역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2-440호

수표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306호(2010.08.26.)로 최초 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20-151호(2020.11.18.)로 사업시행계획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697호(2021.12.16.)로 정비계획 결정(변경)된 수표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신청서가 제출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관계서류를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2022년 6월 15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사업개요

가. 정비사업의 명칭 : 수표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서울특별시 중구 입정동 237번지 일대 / 12,316.6㎡

다.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주)트윈웍스피에프브이 대표 정선교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1길 30

라.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일로부터 60개월

2. 공람개요

가. 공고기간 : 2022.06.15. ~ 2022.06.29.

나. 공람장소 : 중구청 도심재생과(☎02-3396-5774)

다. 주요 변경내용 : 건축계획 변경(정비계획 변경사항 반영)

- 공공임대산업시설부지 기부채납에 따른 기반시설 변경

- 층수:지상24층/지하5층→지상23층/지하5층, 연면적:115,731.96㎡→116,779.53㎡

라. 관계도서 : 공람장소에 비치

마. 공고방법 : 구보게재

3. 기타사항

-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공람을 위한 관계도서를 중구청 도심재생과에 비치하고 있으니, 공람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공람장소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공고내용을 개별 통지하나 미 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통지를 갈음합니다.